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99

발의연월일: 2021. 1. 19.

발 의 자:서영석·강병원·강선우

김성주・소병훈・오영환

이용선 · 이해식 · 인재근

임종성·최혜영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선임, 사전투표소의 설치 개수, 선거비용제한액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현수막의 설치 개수 등을 관할구역 읍·면·동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.

이는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 기회와 사전투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인 읍·면·동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나, 행정구역 개 편으로 읍·면·동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불리한 선거운동 규제 를 받게 되어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되고, 인구 수 대비 충분한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의 편의가 저하된다는 지적 이 있음.

일례로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부천시는 행정구역을 광역동체제로 개편하면서 36개의 동을 10개로 통합하였는데, 이에 따라 부천시 전체 에 10개의 사전투표소만이 설치·운영되어 혼잡이 발생하고 사전투표율 이 하락하는 등 투표 접근권 측면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.

이에 읍·면·동의 통합·개편으로 그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, 현수막의 게시,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, 사전투표소의 설치를 통합·개편 전의 읍·면·동 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선거운동 및 사전투표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62조제2항, 제67조제1항, 제121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·개편 전의 읍 •면·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.

제6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·개편 전의 읍 •면·동 수를 기준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.

제1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·개편 전의 읍 •면·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.

제148조제1항 단서 중 "읍·면·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·면·동을 통합·개편하여 읍·면 ·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
- 2. 읍 면 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거사무원의 선임, 현수막의 게시,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읍·면·동을 통합·개편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2조(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)	제62조(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	②
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	
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	
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	
의하여 선거사무원(제135조제1	
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	
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.	
이하 같다)을 둘 수 있다. <u><단</u>	<u>다</u>
<u>서 신설></u>	만, 제148조제1항제1호에 해당
	하는 경우에는 통합・개편 전
	의 읍•면•동 수를 기준으로
	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.
제67조(현수막) ① 후보자(비례대	제67조(현수막) ①
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	
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	
며,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	
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	
천정당을 말한다)는 선거운동	
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	
읍·면·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	
막을 게시할 수 있다. <u><단서</u>	<u>다만,</u>

신설>

②·③ (생 략)

제121조(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)
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
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
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100만
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
한다. <단서 신설>

- 1. ~ 9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(이하 "사전투표기간"이라 한다) 관할구역(선거구가 해당 구·시·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)의 읍·면·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·운영하여

	제1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
	경우에는 통합ㆍ개편 전의 읍
	·면·동 수를 기준으로 현수
	막을 게시할 수 있다.
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	121조(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)
	①
	<u>다만, 제148조제1항제1호</u>
	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ㆍ
	개편 전의 읍・면・동 수를 기
	준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
	한다.
	1. ~ 9. (현행과 같음)
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	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 ① -

야 한다. 다만, <u>읍·면·동</u> 관 <u>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</u> <u>이 있는 경우에는</u>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 영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⑥ (생 략)

		-, <u>다음</u> 2	각 호의 어
느	하나에	해당하는	경우에는-

----.

- 1.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·면·동을 통합·개편하여 읍·면·동의 수가 줄어든 경 오
- 2. 읍・면・동 관할구역에 군부
 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
 ② ~ ⑥ (현행과 같음)